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의 안 번 호	1059
------------	------

제출년월일 : 2006. 1. .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1일 처리능력 1만 5천톤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민간기업 경영원리를 도입, 경영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코자함

2. 주요내용

- 제천시의 오·폐수처리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천시하수도사업을 설치함(제1조)
-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정함(제2조)
- 제천시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제천시 행정구역내로 함(제3조)
- 제천시하수도사업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담당국장으로 지정(제4조)
-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오·폐수처리 및 비슷한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도록 함(제8조)
-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비는 당해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독립채산 근거 규정을 정함(제10조)
-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하도록 함(제13조)

-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전기금을 관리자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전기금의 관리자는 하수도사업관리자로 함(제17조)

3. 근 거 법령

-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 2005. 7. 13. 법률 7589호]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5. 3. 31. 대통령령 18762호]
-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5. 8. 5. 법률 7670호]

4. 의안전문 : 복 임

첨 부 : 1. 의안전문 1부

2. 근거법령 1부
3. 입법예고 사본 1부. 끝.
4. 참고자료(표준조례안, 공기업추진계획) 1부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제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 구역은 제천시의 행정구역내로 하고, 하수도사업 구역은 제천시 하수도 처리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부담원칙 등을 준용하여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차입금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독립채산) ①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은 제천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하수도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하수도사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제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 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천시가 발행하는 제천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시예산으로 최초 편성·확정되었을 때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조례 제426호 1999. 12. 29)는 이를 폐지한다.
- ③(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 한다.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89호]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6. 하수도사업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제11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1992.12.8>

제13조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2 이상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1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 2 이상의 사업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개정 1980.1.4, 1992.12.8>

제17조 (출자 등<개정 2002.3.25>)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받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92.12.8>

③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제19조 (지방채)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당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특별시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6.12.30, 2004.12.3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제27조 (수입금마련 지출)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불족이 생긴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제34조 (회계의 통합) ①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그 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합한다.<개정 1992.12.8>

②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과 현금취급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2.12.8>

③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개정 1980.1.4, 1992.12.8>

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9> [전문개정 1992.12.8]

제48조 (변상책임) ①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의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02.3.25>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3.31 대통령령 18762호]

제2조 (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2005.3.31>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의료사업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전시·사변·재해등으로 인한 구급,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집단검진·의료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보건위생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벽지·도서 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한 의료시설 및 연구등에 소요되는 경비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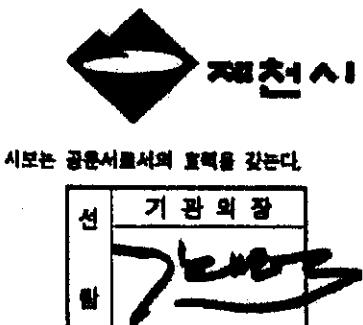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5.8.5 법률 7670호]

제137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68호 2005. 12. 2(금)

【조 래】

○ 천시조례 제718호 [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	2
○ 천시조례 제719호 [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	6
○ 천시조례 제720호 [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	8
○ 천시조례 제721호 [천시청동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	17
○ 천시조례 제722호 [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	19

【입 법 예 고】

○ 천시공고 제2005-667호 [천시지방공기업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1
○ 천시공고 제2005-676호 [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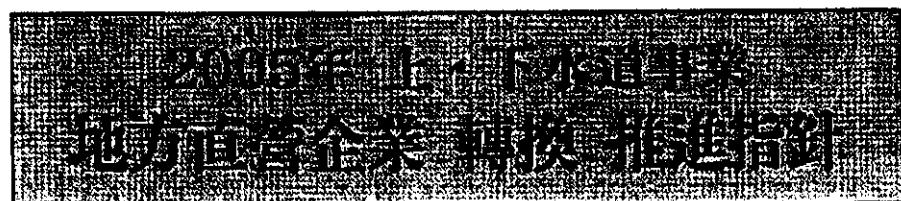
【공 고】

○ 천시공고 제2005-663호 [유기동물소유자확인및환부 공고]	73
○ 천시공고 제2005-669호 [유기동물소유자확인및환부 공고]	74
○ 천시공고 제2005-677호 [공사승달 공고]	75
○ 천시공고 제2005-678호 [소화현장용허가 공고]	76
○ 천시공고 제2005-679호 [천시금고지정 공고]	77

회									
---	--	--	--	--	--	--	--	--	--

발행 : 천시 / 편집 : 홍보체육과 (☎ 640-5073, ☎ 330-701) 충북 천시 천남동 시청길15 (천남동12-2)
천시보는 아주 금요일에 발행되어 광고마감은 매주 수요일까지입니다.

표준조례안



2005. 4. 29.

行政自治部

3월 29일

○○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2006. . . 조례 제 호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00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00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시장(○○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00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

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00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00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00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 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 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00시가 발행하는 00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 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시행일) 이 조례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00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추진계획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을 지방 직영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재원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수익자부담원칙 및 독립채산 기반에 따른 직영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추진하고자 함

예산현황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사용료	국 비	물기금	도 비	시 비	기 타 (-이자수입300 -순세계잉여금: 1,000 -원인자부담금: 600 -과년도수입5)	비 고
2005년	13,693	2,100	4,751	3,037	1,539	1,651	615	
2006년	16,801	2,520	5,225	5,827	397	927	1,905	
증 감	3,108	420	474	2,790	△1,142	△724	1,290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예비비	기 타 (하수도사용료징수 교부금)	비 고
2005년	13,693	1,664	1,357	9,140	834	643	55	
2006년	16,801	1,811	1,333	10,260	1,892	1,455	50	
증 감	3,108	147	△24	1,120	1,058	812	△5	

* 2005년 대비

- 일반회계(시비) 부담액 : 724백만원 감소
- 원인자부담금 등 자체재원 확보 : 1,290백만원 증

□ 공기업전환의 필요성

- (1)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
 - 수익자 부담원칙 및 독립채산의 기반조성
- (2) 민간 경영원리를 도입한 경영효율성의 제고
 - 공기업 경영을 통한 자율성, 탄력성의 부여로 시민의 기대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음
- (3) 사업경영정보의 제공
 - 각종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각종 경영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공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음

□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추진일정

- 2003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50%인상) - 43.2%
- 2005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추진(30%인상) - 61.1%
- 지방직영기업 전환추진지침시달 (행정자치부) : 2005. 4. 29
- 하수도지방공기업전환계획 제출지시(충청북도) : 2005. 6. 10
- 하수도지방공기업전환계획 제출 : 2005. 7. 20
- 하수도 자산평가용역 : 2005. 8. 12
- 공기업추진 벤치마킹 (충남 천안시) : 2005. 10. 21
-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 추진계획수립 : 2005. 11. 7
- 하수도지방공기업전환계획 시의원 간담회개최 : 2005. 11. 15
- 조례안 도 예산담당관실 협의 : 2005. 11. 22
- 조례안 입법예고 : 2005.11.28~12.18
- 조례규칙심의회 : 2006. 1. 12

□ 지방직영공기업과 특별회계의 운영상 차이점

구 분	기타특별회계	지방직영공기업
○ 회계처리	○ 단식부기	○ 복식부기
○ 예산편성	○ 세입, 세출	○ 사업예산 :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 ○ 자본예산 :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
○ 결산	○ 자체결산→지방의회승인	○ 자체결산→공인회계사의 감사 →지방의회승인 - 매년 재무제표작성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원가계산등
○ 예산증감	○ 없 음	○ 없 음
○ 경영평가	○ 재정분석	○ 2년1회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평가 -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 회계장부	○ 징수부,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현금출납부	○ 수입예산정리부, 지출예산통제원장, 자금수입기록부, 자금지출기록부, 총계정원장, 계정별보조원장, 이월예산관리대장, 교부자금관대, 합계잔액시산표 ○ 재고자산대장, 유형자산대장 ○ 차입금관리대장
○ 회계관직	○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수입금출납원, 물품출납 원, 세입세출외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자, 징수관, 기업출납원, 지 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수입금 출납원, 물품출납원, 세입세출외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 법령 적용	○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재무 회계규칙 - 단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회계관련규정 적용